

예 산 총 칙

제1조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464,728,143	428,956,000
일반회계	5,971,149,433	298,557,000
특별회계	2,493,578,710	130,399,000
공기업특별회계	632,911,141	37,372,000
수도사업특별회계	277,179,276	27,717,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8,459,472	6,853,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7,272,393	2,802,000
기타특별회계	1,860,667,569	93,027,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8,099,814	1,404,000
경륜사업특별회계	42,787,147	2,13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6,108,443	22,805,000
교통사업특별회계	71,543,370	3,577,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5,305,583	6,265,000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	20,000,000	1,000,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97,430,941	44,871,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15,000	25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46,000	12,000
유료도로특별회계	43,187,695	2,159,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32,229,942	6,611,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8,034,034	901,000
재정비축진특별회계	20,679,600	1,033,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720,29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320,880,000천원, 특별회계 160,000,000천원이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금회 추경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